

[서식 예] 지급명령 이의신청서

이 의 신 청

사 건 번 호 20○○차○○○ 신 청 인(채무자) ◇◇◇ 피신청인(채권자) ○○○

신 청 취 지

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20○○. ○. ○.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.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♦♦♦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
	내(민사소송법 제470조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만시소송법 제462조 내지 관련법규
	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474조
불복절차	·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)
및 기 간	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
기 타	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3항은 "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
	조의 규정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
	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
	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
	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의신청에 의하여
	소송절차로 이행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인은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.